

국제결제론

제2장 송금방식과 추심방식



원광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유 하상 교수

❖ 제2장 목차



제1절 송금방식

1. 국제결제 방식의 최근 동향
2. 송금방식의 이해
3. 송금방식의 유형

제2절 추심방식

1. 추심방식의 인의 및 종류
2.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3. D/P 및 D/A의 거래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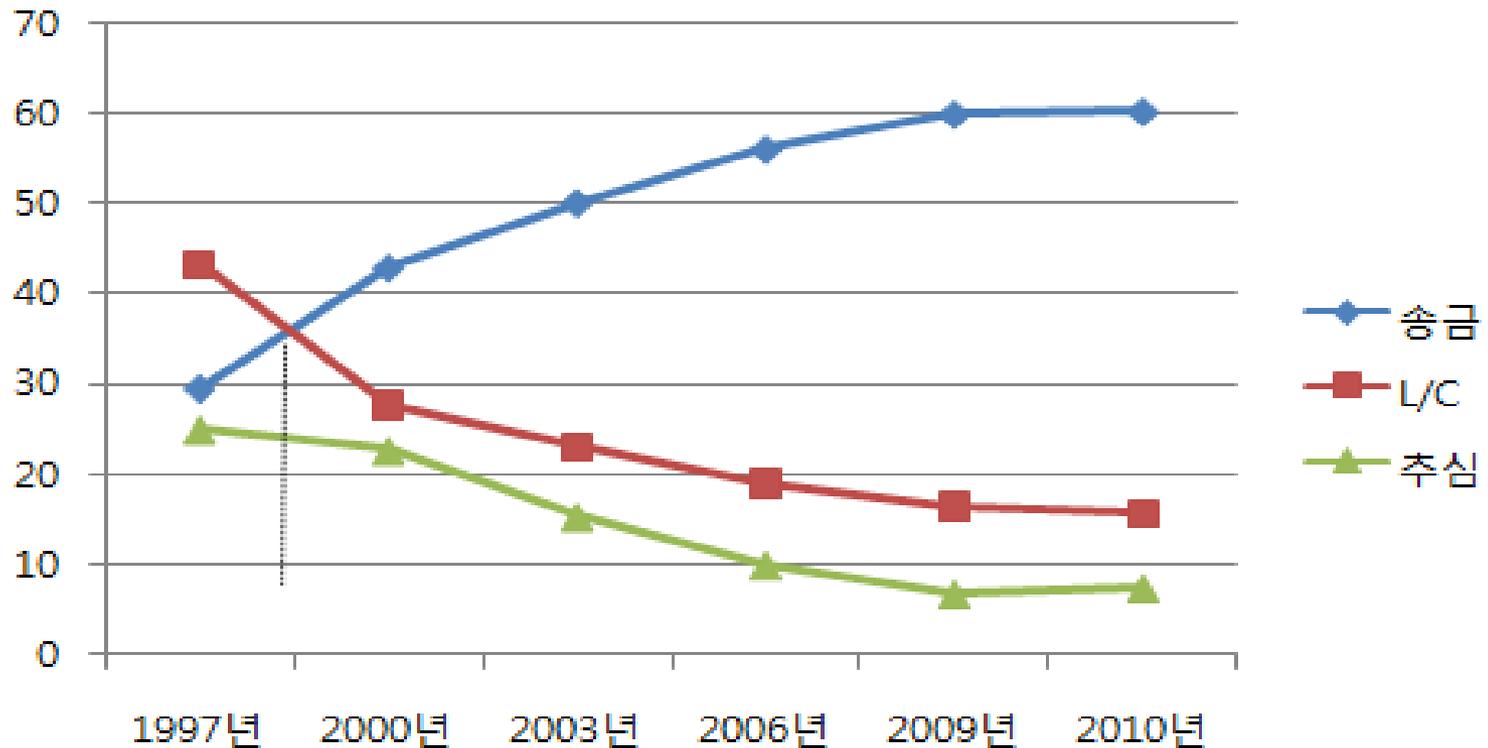
제3절 D/P-D/A 방식의 실무

1. D/P-D/A 방식의 수출실무
2. D/P-D/A 방식의 수입실무

□ 국제결제 방식의 최근 동향 p.39

- 종전-1990년대 초반 : 신용장 방식 60-70%
- 2010년 현재 : 송금결제 방식 60%

단위 : 비중, %



주 : 송금(T/T, M/T, COD, CAD) 신용장(at sight, usance) 추심(D/A, D/P)

[그림 2-3] 일람불 L/C와 송금 거래의 대금결제 시간 비교

<일람불 L/C 거래>
개설통지 : 1일
선적서류 구비 : 7일
매입의뢰 : 1일
매입심사 : 5일
총 14일
<hr/>

VS

<송금거래>
전신환입금 : 실시간

송금방식 사용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 수출보험제도 이용
 - 수출보험공사, 저렴한 보험료
- 거래처에 대한 신용조사 철저
 - 수출보험공사 이용, 저렴한 수수료
- 선수금 유인
 - 일부 금액을 선수금으로 지급하도록 유인
- COD나 CAD와 같은 동시결제방식의 이용 검토
 - 수출상이나 수입상의 지사가 각가구 상대국에 소재하고 있을 때 이용가능
- 선적서류 사본 이용을 통한 위험감소
 - 사본을 수입상에게 송부한 후, 결제가 완료되면 원본 인도
- 소액결제시 소액결제제도(KOPS) 이용
 - 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운영하는 KOPS의 이용 검토

<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구분	기관명	홈페이지
국내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무역보험공사 ● 한신평신용정보 ● 신용보증기금 ● 한국기업데이터 ● (주)나이스 디엔비 ● Kotra 해외사무소(KBC) 	<p>www.ksure.or.kr</p> <p>www.kisamc.com</p> <p>www.kodit.co.kr</p> <p>www.kedkorea.com</p> <p>www.nicednb.com</p> <p>www.kotra.or.kr</p>
해외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UN & BRADSTREET(미국) ● EULER HERMES SFAC(독일) ● EXPERIAN(영국) ● COFACE(프랑스) ● SINOSURE(중국출구신용보증공사) 	<p>www.duncorp.com</p> <p>www.eulerhermes.fr</p> <p>www.experianplc.com</p> <p>www.coface.com</p> <p>www.sinosure.com.cn</p>

□ 송금방식의 개념 및 특징(p.43)

- 수출상이 대금청구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수입상이 자신해서 수출상에게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함(순환방식)
- 송금방식의 유형
 - 사전송금방식, 사후송금방식, 청산계정방식, 신용카드방식
- 송금수단
 - 송금수표, 현금, 우편환, 전신환, 수표
- 송금방식의 특징
 - 규제하는 국제규범이 없음
 - 대금결제와 선적서류(물품)의 인수도가 분리되어 거래됨
 - 송금시기에 따라 위험부담자가 달라짐

□ 송금환의 종류 p.43

■ 송금수표

개인수표

- 수입상 개인수표(personal check)를 수출상 앞으로 발행하여 우송하고, 수입상은 그 수표를 자신의 거래은행에 매도하여 대금을 상환
 - 수입상의 신용을 신뢰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추심방식으로 처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상이 자신의 거래은행의 보증을 받아 사용(보증수표, certified check)

은행수표

- 수입상이 수입대금을 은행에 지급하고 그 금액 상당의 송금환(송금수표, 은행수표)를 발급받아 수출상에게 우송, 송금환 수취인(수출상)은 송금환에 표시된 지급은행에 지급을 요청하고 지급은행은 송금환 발행은행이 보낸 송금환 발행통지서와 수취인이 제시한 송금환을 대조확인 후 대금지급

■ 우편송금

- 우편송금(mail draft, M/T)은 수입상이 은행에 수입대금을 내고 송금을 인뢰하면 은행은 송금환을 발행하는 대신에 지급은행 앞으로 수취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지시서를 발행하여 직접 지급은행을 우송
- 지급은행은 지급지시서에 의해 수취인의 예금계정에 송금대전을 입금한 후, 그 사실을 수취인에게 통지함으로 결제가 완료됨

■ 전신송금

- 전신송금(telegraphic transfer, T/T)은 송금인의 인뢰에 따라 은행이 자기책임으로 지급지시서를 보낸다는 점에서 우편송금과 다름
- 지급지시를 우편이 아닌 전신을 이용하므로 신속한 지급이 가능함, 오늘날 대표적인 송금방식으로 위치하고 있음

□ 사전송금방식 p.45

-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입상에 물품대금을 미리 송금해주는 방식
 - CWO, cash with order
- 사전송금방식의 이용사례
 - 소액결제
 - 수출상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 본지사간의 거래
 - 수출상에 대한 자금지원
 - 구하기 어려운 물품의 우선확보를 위함
- 사전송금방식의 문언
 - By T/T in advance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Sales Contract
 - By T/T remittance before shipment in favor of supplier
 - T/T in advance in favor of supplier
 - T/T remittance after receiving firm offer sh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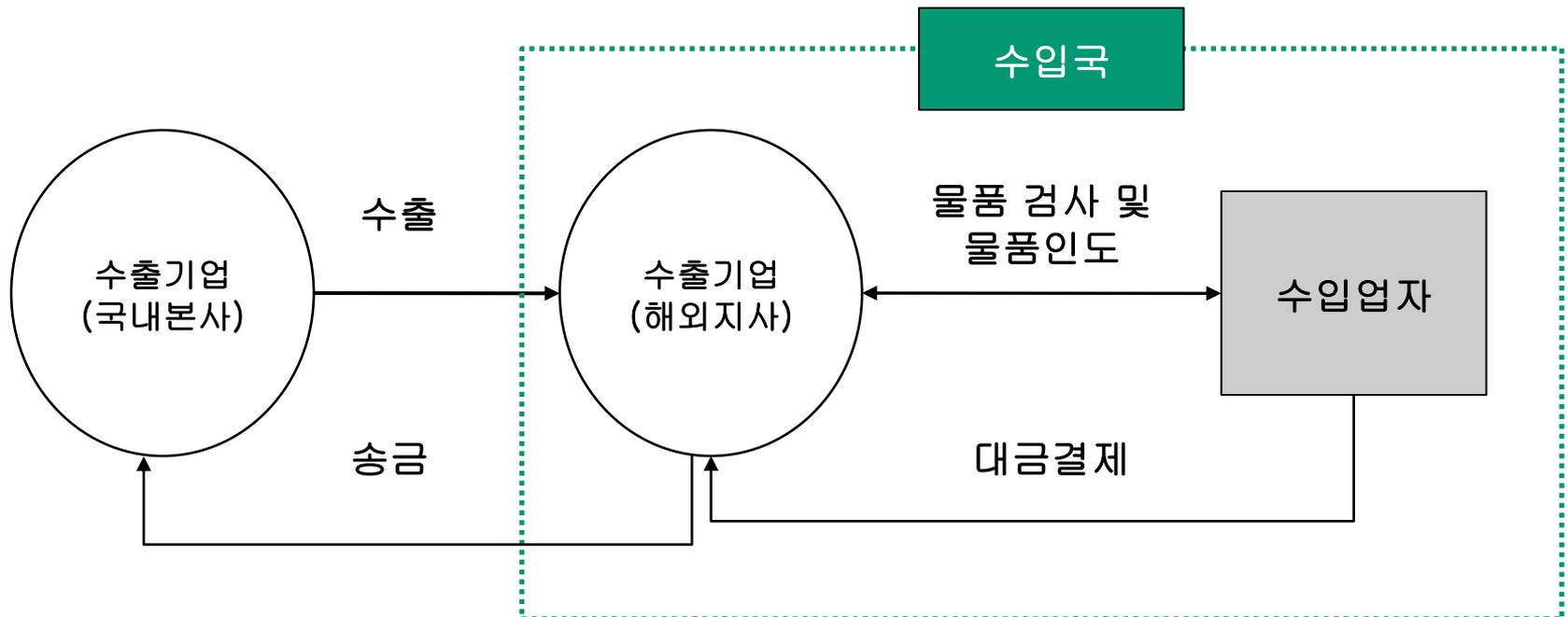
□ 사후송금방식 p.46

- 선적서류의 인도와 동시 또는 인도 후 일정기간 후에 수입상이 수출대금을 송금해 주는 방식
 - 동시결제방식 or 후결제방식
- 대금교환의 대상에 따른 구분
 - 현물상환방식(COD, cash on delivery) : 수출상이 보낸 현품을 수입상이 직접 확인한 후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 서류상환방식(CAD, cash against documents) : 수입상이 선적서류를 입수한 후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 사후송금방식의 표시 문언
 - By T/T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B/L
 - T/T in favor of supplier upon receipt a non-negotiable copy of clean on board B/L consigned to the buyer
 - Buyer shall remit by wire transfer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B/L issuance
 - Buyer shall remit by T/T payment within 10 days after the shipment
 - Buyer shall remit by wire transfer within 60 days after the date of arrival at buyer's warehouse in Chicago

■ 현물인도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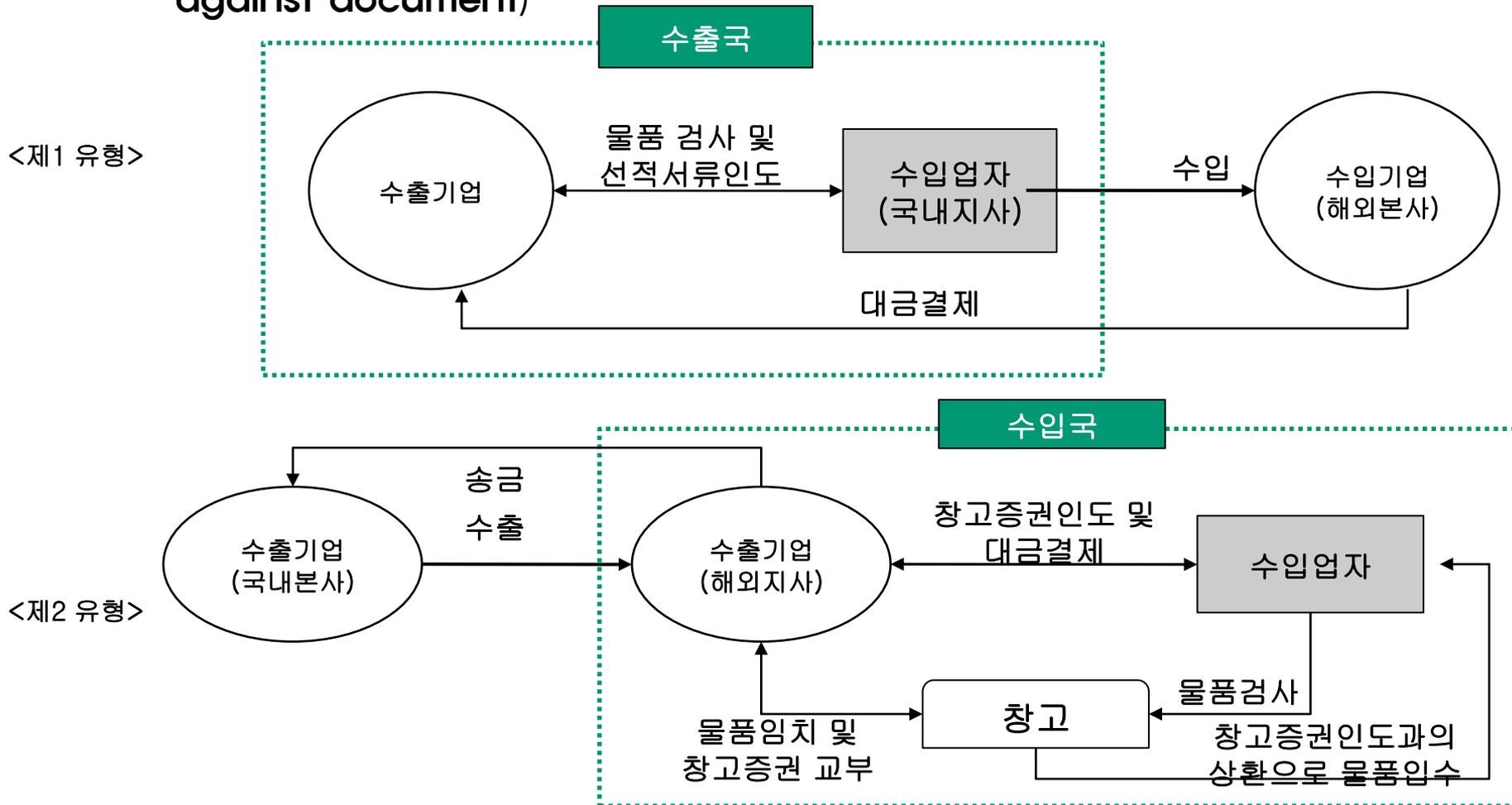
- 수입국에 수출상의 지사나 대리인이 있을 때, 수출상이 물품을 그들에게 보내서 수입상이 물품을 검사하게 한 후, 그 물품과의 상환으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cash on delivery)

[그림 2-4] 현물상환방식(C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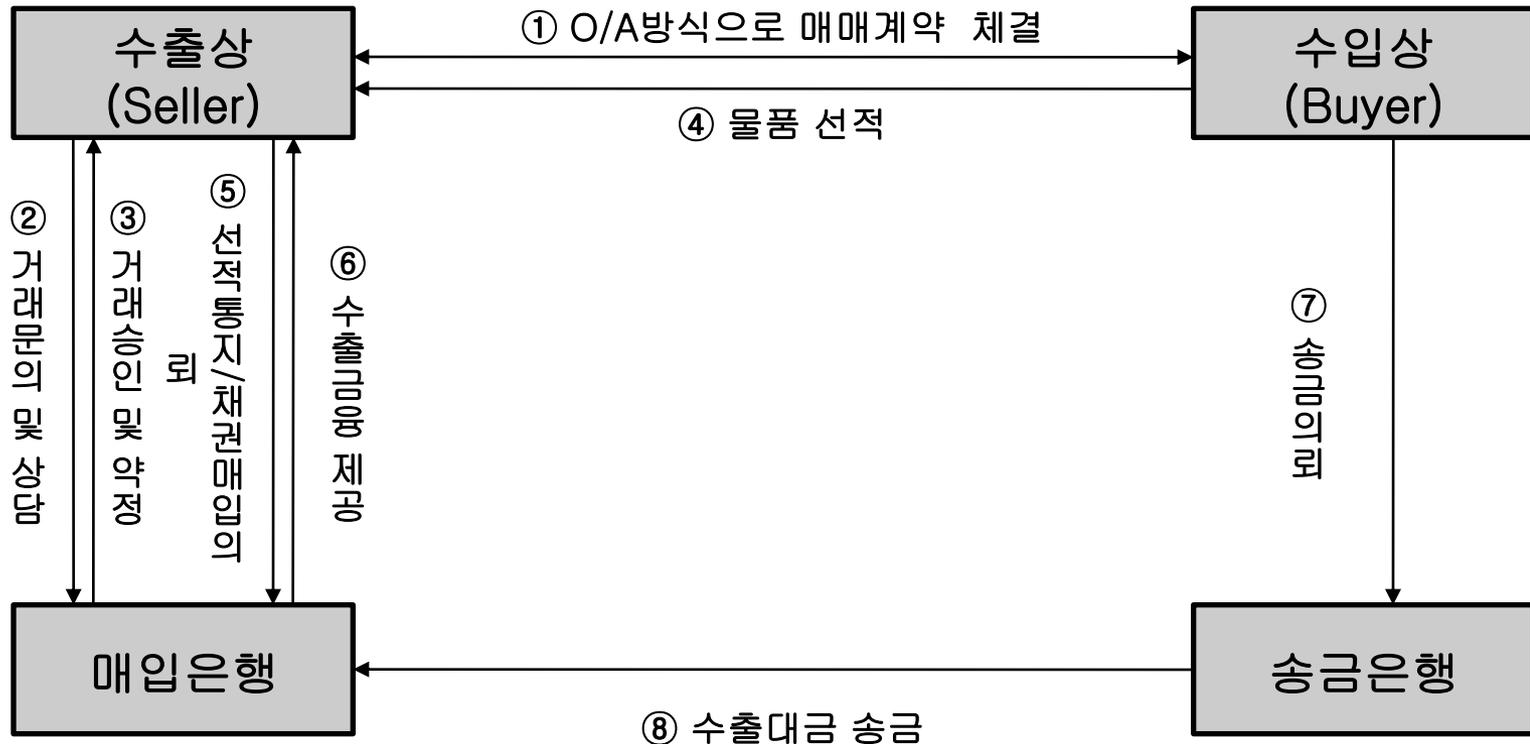
■ 서류인도방식

-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거래은행 또는 수입상의 대리인(지사 등)에게 제시하면, 그 선적서류압인 상황으로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방식(cash against document)



□ 청산계정방식(open account, O/A) p.50

- 수출상이 환어음 발행하지 않고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직접 보내며, 수출상이 선적사실을 통지하는 시점에 상업송장의 금액을 수출상은 채권으로 수입상은 채무로 각각 장부상의 대변과 차변에 기재해 두었다가 미리 정해진 장부마감일에 서로 상계하고 그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



이용증가 원인

- 수출상 : 거래절차 단순, 은행수수료 절감
- 수입상 : 대금결제 이전에 검사가능, 대금결제 유예에 따른 자금유동성 제고
- 수출상 : 입상수출채권의 매각을 통해 조기 수출대금 현금화 가능
 - 신용장 거래의 환환어음 매입과는 본질적으로 다름

□ 추심방식의 의의(p.52)

■ 추심의 개념

- 수출상이 수입상을 지급인(drawee_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추심인뢰은행에 추심을 인뢰하고, 동 은행은 추심은행에 추심을 인뢰하여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결제방식

서류의 정의

- 금융서류
 -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영수증 등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용되는 서류
- 상업서류
 - 송장, 선적서류, 권리증서, 보험서류,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 금융서류 이외의 모든 서류
- 무환환추심과 환환추심

■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 URC, Uniform Rule for the Collection
- 당사자들이 URC 적용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가능(임의규정임)
 - “This Collection is subject to Uniform Rules for Collection, 1995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22”

□ D/P, D/A 결제방식의 이해(p.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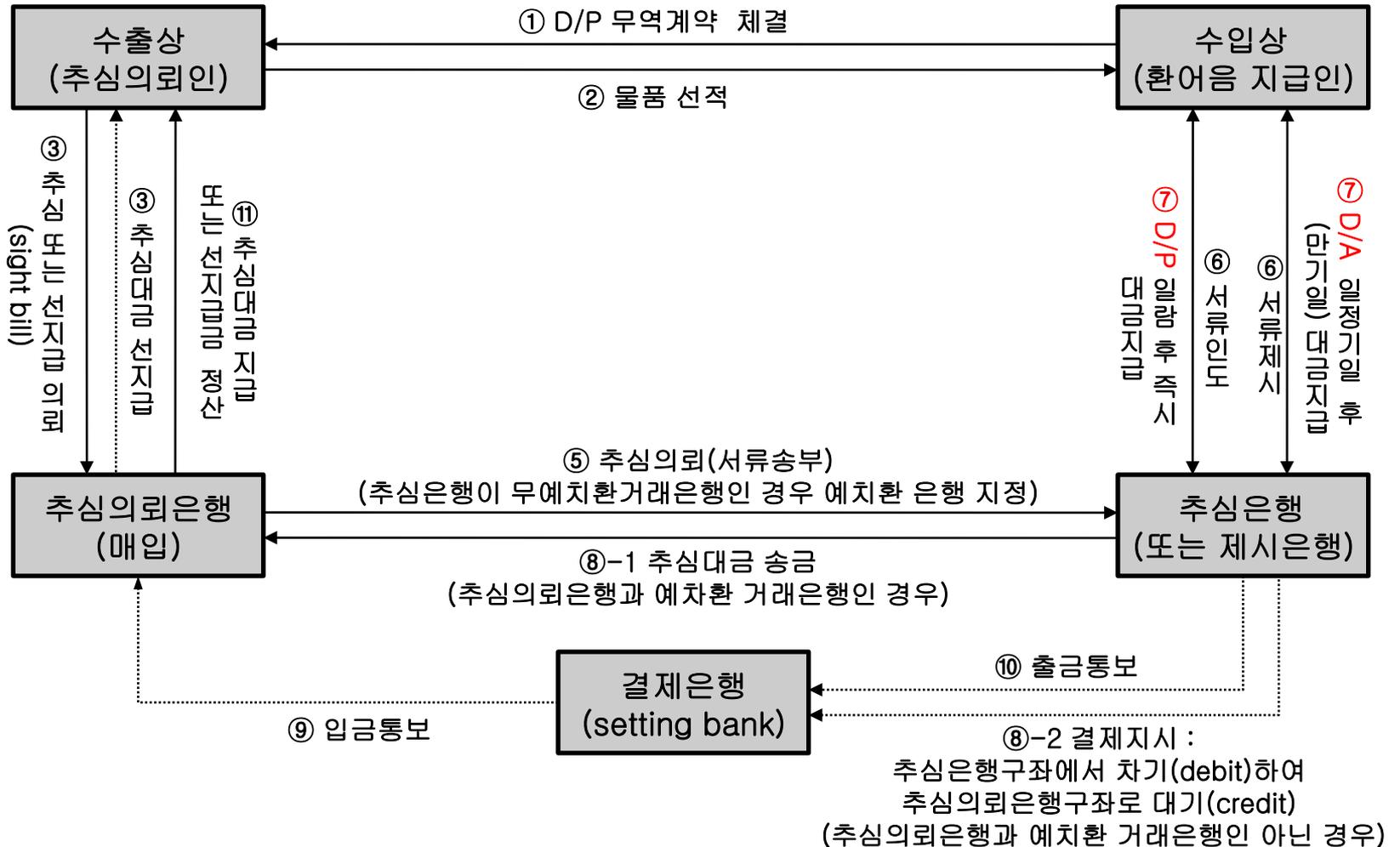
■ 지급인도조건

- D/P(documents against payment)
 -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일람불환어음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인뢰하고, 그 은행은 추심은행에 추심을 인뢰함. 추심은행은 서류와 인 상황으로 추심대금을 추심하여 추심인뢰은행에 송금하는 방식
- D/P 표시문언
 - deliver documents against payment
 - D/P at sight
 - sight
 - x x days D/P
 - at sight on arrival of vessel

제2절 추심방식

1. 추심방식의 의의 및 종류

[그림 2-7] D/P 및 D/A의 거래절차



■ 지급인도조건

-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수출상이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기한부어음(usance/time bill, term bill)에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추심인뢰은행)에 추심을 인뢰하면, 추심인뢰은행은 당해 서류를 수입상의 거래은행(추심은행)으로 보내어 추심을 인뢰하고, 추심은행은 수입상(drawee)으로 하여금 어음을 인수하도록 통지한다. 수입상은 대금을 결제함이 없이 먼저 추심은행으로부터 당해 서류를 인수하고, 후일 환어음에 기재된 어음만기일에 대금을 추심은행에 지급하면 된다. 그리고 추심은행은 수입상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추심인뢰은행으로 송금함으로써 결제가 완료된다.
- D/A 표시문언
 - deliver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D/A 90 D/S
 - 90 days after arrival of the steamer(or cargo)
 - D/A 90 D/S B/L
 - 90 days after sight
 - 90 days after B/L date
 - at 90 days sight
 - 90 days after date(of draft)

□ 추심방식의 특성(p.55)

■ 추심방식과 신용장 방식

차이점

- 지급인무자 : 신용장거래 - 발행은행(확인은행), 추심거래 - 수입상
- 적용규칙 : 신용장거래 - UCP, 추심거래 - URC
- 환물소유권 : 신용장거래 - 발행은행이 유보, 추심거래 - 수출상이 유보
- 은행의 서류심사임무 : 신용장거래 - 은행이 부담, 추심거래 - 의무 없음
- 은행의 선지급의 의미 : 신용장거래 - 은행의 매입=구매, 추심거래-용자행위

■ 추심방식과 Usance 방식에 대한 오해

- 추심방식은 모두 외상거래이다.
 - D/P는 통시급과 유사
- Usance L/C = D/A?
 - Usance L/C = 은행이 지급확약, D/A = 지급확약 없음

□ 추심방식의 관계당사자(p.57)

추심인
(principal)

- 추심을 인뢰하는 당사자, exporter, seller, drawer, consignor, customer

추심인은행
(remitting bank)

- 추심인인의 인뢰를 받아 수입국의 추심은행에 추심을 인뢰하는 수출국의 은행, 추심지시서 작성

추심은행
(collecting bank)

- 추심인은행을 제외한 추심에 참여하는 모든 은행, 수입상의 거래은행, 추심지시서에 따라 추심하여 추심인은행에 송금

제시은행
(presenting bank)

- 지급인에게 직접 추심서류를 제시하는 추심은행, 추심은행으로부터 추심업무를 위임 받은 은행

지급인
(drawee)

- 궁극적으로 추심서류를 인도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인수하는 당사자, importer, buyer, consignee

□ 추심의 형식과 구조(p.58)

■ 추심지시서

- 추심지시서(collection instruction) : 추심인뢰은행이 추심인뢰인의 지시에 따라 추심조건을 열거한 서류,
 - 추심은행은 추심인뢰서와 URC의 규정에 따라서만 추심업무를 수행해야 함 (다른 어떠한 지시에도 따르지 않음)

■ 추심지시서의 내용

- 추심인뢰은행의 이름, 주소 등
- 추심인뢰인의 이름, 주소 등
- 지급인의 이름 주소 등
- 제시은행의 이름 주소 등
- 추심금액 및 통화
- 인수, 지급 조건(서류인도조건)
- 추심수수료에 관한 사항
- 추심될 이자에 관한 사항
- 지급방법과 지급통지의 형식
- 지급/인수거절에 관한 사항

□ 추심서류의 제시 형식(p.60)

■ 추심서류의 제시

- 추심은행은 인수받은 서류를 심사함이 없이 접수된 형태로 지급인에게 제시
 - 다만, 추심인뢰인의 비용부담으로 인지를 첨부할 수 있거나, 배서 등을 할 수 있도록 수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추심인뢰은행은 추심인뢰인이 지정한 은행(있다면)이나 자신이 선택한 은행을 추심은행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일람출급과 인수

- 서류가 일람출급조건인 경우 제시은행은 지체없이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해야 함
 - 일람출급이 아닌 기한부지급조건이면 즉시 인수를 위한 제시를
 - 지급이 요구되는 때는 적합한 만기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해야 함

■ 상업서류의 인도

추심지시에 대한 오해

- 추심지시에 일람불어음의 지급과의 상환으로 서류를 인도하도록 명시하거나 기한 부어음 인수와의 상환으로 서류를 인도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는 혼란여지 없음
- D/P 조건을 의미하는 “지급과의 상환으로 서류가 인도될 것” 을 지시하면서도 D/A 조건에서 사용되는 기한부어음이 제시될 때는 혼란의 가능성이 있음
 - 이 때는 상업서류는 지급과의 상환만으로만 인도되어야 하며,
 - 이로 인해 서류인도의 지체가 발생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함, 왜냐하면 기한부어음은 미래의 만기일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상업서류는 지급과의 상환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으므로 은행은 만기일이 도래하여 대금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상업서류를 인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임

■ 추심서류의 작성

- 요구하는 서류는 샘플을 제공하거나 그 서류의 형식과 문구의 상세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 그러하지 않을 경우 추심은행이나 지급인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시해도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추심방식 관계당사자의 의무 및 책임(p.62)

■ 추심결제 관계당사자의 의무

추심은행의 신의성실과 상당한 주의의무

- 추심에 관여하는 은행은 신의성실에 따라서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또한 현지의 관례와 법률에 따라서 행동해야 함

추심서류 대 물품, 용역, 이행

- 은행의 사전동의 없이 물품이 은행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송 또는 탁송금지
 - 이를 위반하면 은행은 그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은행은 운송인이나 창고관리인이 아님(신용장 거래의 추상성과 관련됨)
- 만약에 은행이 물품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추심인뢰인이 부담함
- 지급인이 추심에 대한 지급, 인수 또는 기타 조건을 충족시켰으며, 추심은행이 물품의 인도를 주선하는 경우에는 추심인뢰은행이 추심은행에게 그렇게 하도록 수권한 것으로 간주됨
 - 예컨대 추심은행이 서류를 지급인에게 인도한 후에 물품인도지시를 내리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추심지시서에는 이러한 지시가 없을 때에는 추심은행이 이러한 인도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자동적으로 갖게 됨

■ 추심관계 당사자의 면책

지시 받은 추심당사자의 행동에 대한 면책

- 추심인뢰인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다른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은행은 이를 추심인뢰인의 비용과 위험으로 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접수된 추심서류에 대한 면책

- 은행은 접수된 서류가 추심지시서에 열거된 것과 외관상 일치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견된 경우 이를 전신 또는 다른 신속한 수단으로 추심지시서를 보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추심인뢰인과 추심인뢰은행은 추심지시서에 개별서류와 각 서류의 숫자를 명시해야 함
 - 은행은 추심지시서에 열거된 서류의 종류와 숫자만 확인할 뿐 서류를 심사함이 없이 접수한대로 제시한다.

추심서류 유효성에 대한 면책

- 은행은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허위성, 법적효력에 대한 책임이 없음
- 은행은 서류에 표시된 물품의 명세, 양, 무게, 품질 가격 또는 존재에 대해 책임을 지지아니함
- 은행은 물품의 탁송인, 운송인,, 운송주선인, 수화인, 보험자 등의 신의성실, 작위, 부작위, 파산, 이행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전자자료의 송달 및 번역 중의 지연 및 멸실에 대한 면책

- 은행은 모든 통보, 서신, 서류의 송달 중의 지연, 멸실에 기인한 결과와 전기통신의 송신 중에 발생하는 지연, 훼손, 오류, 번역이나 해석상의 오류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불가항력

- 은행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추심금액의 지급(p.66)

■ 추심금액의 지체 없는 지급

- 추심된 금액은 지체없이 추심지시서를 보낸 당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함
 - 추심은행이 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경로 즉, 추심인뢰은행에 송금되어야 함(돈 세탁 방지 목적)
- URC 개정시 “지체 없이without delay” 대신 ” 서류심사기간 5일” 처럼 명시하자는 의견도 개진되었으나, 추심방식은 은행의 서류심사가 없으며, 단순한 대리인의 역할을 할 뿐이므로 현행의 규정을 그대로 두기로 합의됨

■ 외국통화에 대한 추심금액의 지급

- 지급국가의 통화로 지급하도록 한 서류인 때 제시은행은 추심지시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그 내국통화가 추심지시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즉시 처분될 수 있는 때에만 현지국 화폐에 의한 지급과의 상황으로 지급인에게 서류를 인도해야 함

■ 추심금액의 분할지급

- 무환환 추심에서 분할지급은 지급지의 법률로 허용되는 때에는 그 범위와 조건에 따라 분할지급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에도 금융서류는 지급 전액이 수령되었을 때 지급인에게 인도됨
- 환환추심에서 분할지급은 추심지시서에 특별히 허용된 경우에만 인정됨
 - 별도의 지시가 없다면 제시은행은 지급 전액을 받은 후에 한하여 서류를 지급인에게 인도해야 함
 - 불할 지급에 기한 서류인도 지체로 야기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추심, 이자, 수수료, 비용(p.68)

■ 추심이자

- 추심지시서에 단순히 이자가 추심되어야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지급인이 이자 지급을 거절할 때, 추심은행은 이자를 추심함이 없이 서류를 인도할 수 있음
 - 이는 그동안 이자 추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경험이 반영된 것임
- 다만, 추심지시서에 이자는 포기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강력한 인지 표현)하고 있는데, 지급인이 이자 지급을 거절한다면 추심은행은 서류를 인도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 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추심 수수료 및 비용

- 이자와 마찬가지로 추심지시서에 강력한 인지가 표현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인이 지급을 거절할 때, 추심은행은 이자를 추심함이 없이 서류를 인도할 수 있음
- 만약 추심은행이 추심인원인/추심인원은행을 대신하여 물품의 인도를 주선하기로 합의하였고, 관세나 운임, 비용 등을 대신 지급한 때에는 추심인원인/추심인원은행에게 이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선지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기타(p.69)

■ 환어음의 인수

- 제시은행은 환어음의 인수형식이 완전하고 정확한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
 - 그러나 서명의 진정성이나 서명자의 권한에 대한 확인 책임은 없음
- 추심은행/제시은행이 별도로 동의하지 않는 한 환어음을 이들 은행 앞으로 발행해서는 안됨

■ 추심을 위한 약속어음 및 기타 증서

- 제시은행은 어떠한 서명의 진정성 또는 서명권한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음

■ 추심서류의 거절증서

- 추심지시서에는 인수거절/지급거절을 할 때 보내야 할 거절증서(protest)에 대한 법작잘차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명기하여야 함
 - 추심은행은 거절증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요청이 있을 때만 작성된다.

■ 추심금액의 예비지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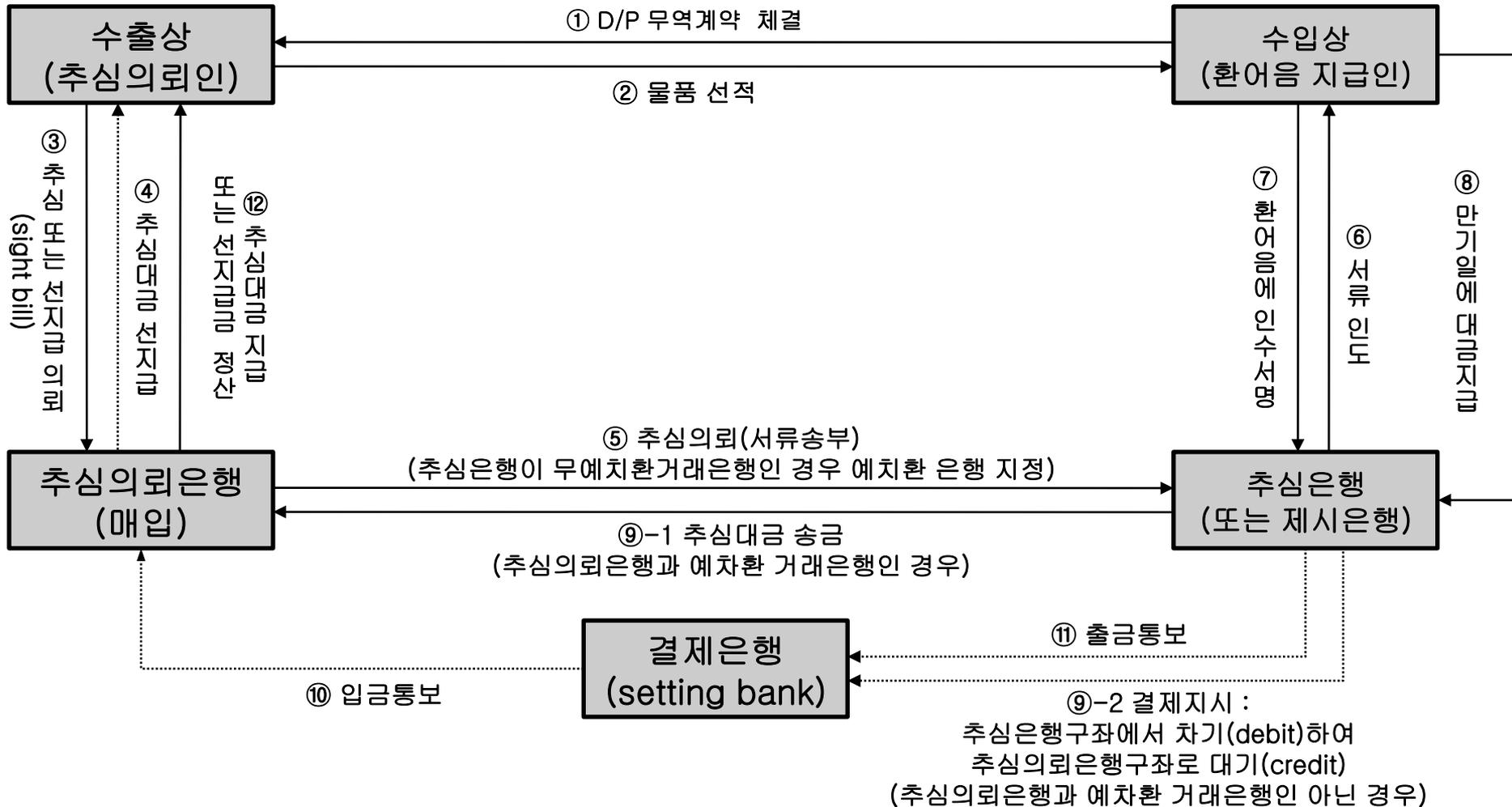
- 예비지급인(case-of need, principal' s respresentative) 수입상이 추심서류의 인수나 지급을 거절할 경우, 수출상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자
- 예비지급인의 권한에는 지급이나 인수만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와 모든 사항을 제한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추심지시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추심결과에의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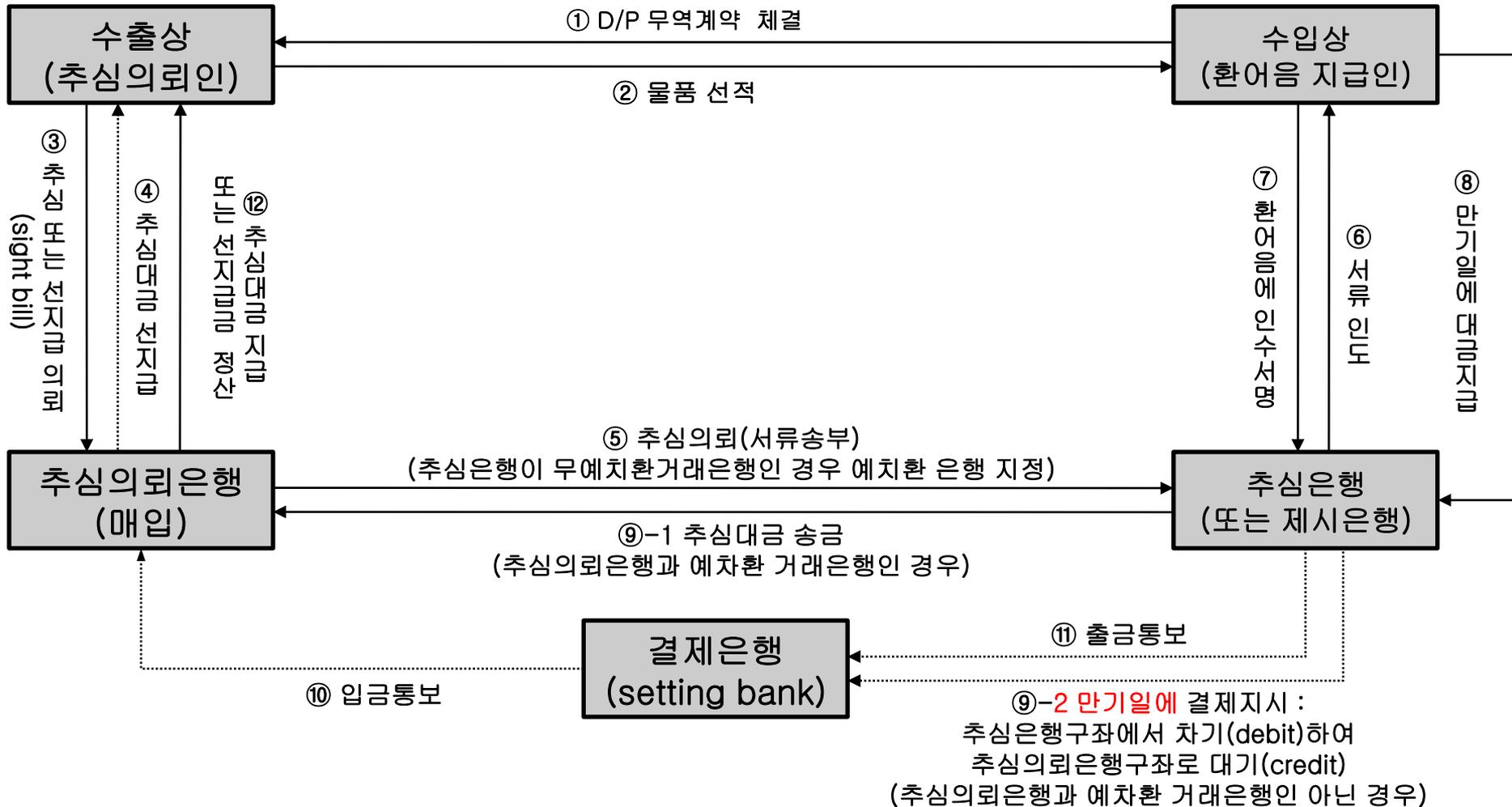
- 추심은행은 추심결과에 따라 지급통지나 인수통지 또는 지급거절이나 인수거절 통지를 하여야 함
- 이러한 통지를 받은 추심인뢰은행은 향후의 서류처리에 대한 적절한 지시를 하여야 함
 - 적절한 지시를 60일 이내에 제시은행에 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책임 없이 추심지시서를 송부한 은행으로 반송할 수 있음
- 지급통지 : 추심은행은 추심인뢰은행에 추심한 금액, 공제할 수수료, 비용, 자금처분방법 등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함
- 인수통지 : 추심은행은 지급인의 인수가 완료되면 이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함
- 지급거절 및 인수거절 통지 : 제시은행은 지급거절 또는 인수거절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추심인뢰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함

“Accepted on Mar. 20, 20XX
by xxx Co. LED.,
Payable at xxx Bank, Seoul, Korea”

[그림 2-8] 인수도 방식(D/P)의 거래절차(p.71)



[그림 2-8] 인수도 방식(D/A)의 거래절차(p.74)



□ 수출환어음의 매입 (p.77)

■ 매입시의 유의사항

- ① 추심인뢰서에서 명시한 서류의 구비 여부
- ②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통수
- ③ 추심서류와 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
- ④ 추심서류 상호 간에 모순 여부
- ⑤ 유가증권(환어음, 선환증권 등)이 정당하게 발행, 배서 및 양도되었는지 여부
- ⑥ 지급인(수입상)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인수가 확인되었는지 여부, 이는 추심인뢰 은행의 매입행위가 수출상의 신용에 기초한다고 할지라도 보험회사가 보험인수를 하지 못할 정도로 수출상의 신용이 불량한 경우 은행이 매입에 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매입 후의 유의사항

- 만약에 지급인(수입상)이 지급 또는 인수를 거절하거나, 지급지연 또는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감액을 요구했을 때
- 추심인뢰은행은 수출상에 선급한 대금 및 비용의 상환을 요구하게 됨

□ 추심인뢰서 및 거절증서 (p.78)

■ 추심인뢰서의 검토

추심인뢰서(collection order) 추심인뢰은행이 추심은행에 대한 추심거래와 관한 모든 지시사항을 명기하고 있는 서류

- 접수한 서류가 추심인뢰서에 기재된 대로인가의 여부
- 지급인 또는 지급장소의 완전한 주소가 명기되어 있는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다면 추심은행은 이에 대한 임무나 책임을 지지 않게 됨
- 확정일 출급조건의 환어음이 첨부된 환환추심인 경우 D/A 또는 D/P의 조건표시의 명시 여부
-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 시에 은행이 취할 조치에 대한 지시가 명기되어있는지의 여부, 이에 대한 명확한 지시가 없을 때, 추심은행은 서류의 인수거절에 대한 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할 임무를 지지 않음
- 이자요청이 있는가의 여부, 만약에 이자요청이 있으나 이자를 포기하여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기재가 없는 한, 제시은행(추심은행)은 이자를 추심함이 없이 인수도 또는 지급도로 서류를 인도할 수 있음. 이자를 반드시 추심하고자 할 때에는 추심인뢰서에 이자율과 이자계산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추심에 따르는 수수료 또는 비용이 지급인의 부담이라고 지시되어 있는지 여부, 이러한 표시가 있는데도 지급인이 지급을 거절할 때, 지급인뢰서에 이러한 비용을 포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은행은 당해 비용을 추심하지 않고 지급도 또는 인수도로 서류를 인도할 수 있음. 추심인뢰인이 모든 비용을 포기한다면 추심인뢰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추심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음

■ 운송서류의 인도

D/P 조건

- 추심은행은 D/P 대금이 결제되는 즉시 추심외국은행에 지급통지서를 송부해야 함
- 추심외국은행이 추심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인 때에는 지급통지서를 별도로 발송할 필요 없음

D/A 조건

- 어음이 인수되고 만기일이 확정되면 추심은행은 인수일자, 인수금액, 만기일 등의 명세를 기재한 어음인수통지서를 작성하여 추심외국은행으로 송부
- 운송서류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하지 아니할 때는 어음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보고 어음인수거절통지서를 추심외국은행에 송부(그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기재하여)

거절증서

- 어음발행인의 채권보전을 위해서 추심은행으로 하여금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 거절증서란 어음상의 권리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행위를 증명하는 공증증서, 2 밀힘

□ 운송서류의 인도 (p.80)

- 수입상이 추심은행으로부터 운송서류를 인도받는 방법
 - 인수한 어음의 만기일 또는 기일 전에 어음대금을 지급하고 운송서류를 수취하는 지급인도조건(D/P)의 방법
 - 수입상이 은행으로부터 화물환어음을 제시받은 때에 그 어음을 인수(acceptance)하고 운송서류를 수취하는 인수인도조건(D/A)의 방법
 - 은행보중에 의한 화물환어음의 선취인도 방법(L/G)

■ D/P 조건의 인도

- 지급도조건(D/P)에서는 원칙적으로 만기일에 어음대금을 완납해야 운송서류를 인수할 수 있음(D/P 60days after sight 등의 경우)
- 그러나 창고료나 보험료와 같이 불필요한 비용의 추가, 환시세와 상품시세의 변동에 의한 위험부담, 판매적기를 놓칠 우려 등의 이유로 수입상이 사전에 서류인도를 요청해 오면, 은행은 지급기일 전이라도 어음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관계서류를 인도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

■ D/A 조건의 인도

- 수입상은 추심은행이 제시한 환어음의 이면에 “Accepted” 라는 인수문언과 인수한 일자(날짜)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은행에 반납한다.
- D/A어음의 인수행위는 지급인인 수입상이 어음만기일에 확실히 지급하겠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므로, 추심은행은 즉시 운송서류를 인도한다.

□ D/P, D/A의 대금결제 (p.82)

- D/A의 어음만기일이 도래하면 추심은행은 대개 만기일 1주일 전에 어음지급인에게 만기일통지서(due date advice)를 발송하여 대금을 추심함
- D/P, D/A 대금의 송금

첫째, 추심은행이 추심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일 경우 : 추심은행에 다른 지시가 없는 한 당연히 그 은행을 결제은행으로 하여 송금.

둘째, 추심은행이 추심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아닌 경우:

- ① 추심은행이 추심은행에 특정 추심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을 결제은행으로 이미 지정한 때에는 그 은행으로 송금. 대부분의 경우 이에 해당.
- ② 추심은행에 지시된 결제은행이 추심은행의 당좌예치은행이 아니거나, 결제은행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추심은행 소재지 또는 근접지에 있는 추심은행의 예치환은행 중에서 선정하여 결제은행으로 한다.
- ③ 추심은행이 추심은행의 국외지점일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송금지시가 없는 한 그 지점으로 송금한다.



감사합니다

